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차 개정 2013. 03. 11
제2차 개정 2014. 10. 29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응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4.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합격기준)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7. (보고) 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72점 이상
2. TOEIC 700점 이상
3. TOFEL(CBT) 217점 이상
4. TOFEL(IBT) 82점 이상
5. TOFEL(PBT) 553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7.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모의토익 750점 이상 (개정 2014.10.29)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연구계획서 발표)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2. 논문연구계획서의 발표는 주임교수 주관으로 전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발표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면제한다.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2. (인정환산율) 인정환산율 100% 이상 ① 1인 단독 100% ② 2인 공동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70%, 그 외의 경우 30% ③ 3인 공동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50%, 그 외의 경우 25%, ④ 4인 공동 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30%, 그 외의 경우 20%. (개정 2014.10.29)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1.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0.29)
2.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9)
3.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학내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